

시행일자 : 2021. 8. 2.

발 신 인 : 오재국(보아스이비인후과 대표원장)

서울 중구 다산로 111 한미빌딩 3층

수 신 인 : 주식회사 보아스메디칼(대표이사 김정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8, 747타워 702, 703호

제 목 : 상표권 침해 관련 통보의 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보아스'(BOAZ)의 상표권자로서 '병원업, 의료보건장비임대업, 의료보조업, 의료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에 대하여 2007. 10. 15.부터 현재까지 위 상표에 대한 독점적이고 전속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표등록번호 제41-0145941호).

본인은 위와 같은 상표를 이용하여 서울 중구 다산로 111 한미빌딩 3층에서 보아스이비인후과를 개설운영하고 있고, 9곳(면목, 덕골, 강서, 마포, 안산, 일산, 인천, 석촌, 제기)에 상표권 사용을 허용하여 각 개설원장들이 같은 상호로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http://boazent.co.kr/ 참조).

3. 상표법상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제3자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등을 할 수 있으며, 형사상으로는 상표 침해죄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귀사는 '**보아스'(BOAZ)**라는 상호로 의료기관들을 상대로 병의원 컨설팅,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귀사의 사업은 본

인의 의료 관련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하며, 상호 자체는 동일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귀사가 서울지역 의료기관들을 상대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다수의 개원의로부터 병의원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는지 확인하는 문의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의 기준으로 귀사의 상호와 본인의 상표는 동일하고, 귀사의 병의원 컨설팅 사업과 본인의 의료 사업은 유사하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보아스' 상표는 본인 뿐만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에서 총 9곳의 개설 원장들도 사용을 하고 있는 관계로 상표권 사용을 허락한 본인은 상표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귀사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 관련 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적 조치를 먼저 고려하는 것보다는 귀사와 원만한 협의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귀사의 책임자와 유선 또는 대면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기를 원하오니 본 내용 증명을 받으시면 보아스이비인후과 본원 담당자 김형열 총무(연락처 : 010-8759-1530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서비스표등록원부

2021. 8. 2.

오재국



04590





2번 (도로명주소경정등록)  
부기2 관 리 번 호 : 2011-5278616

등록원인일자 : 2011년 12월 31일

도로명주소법제20조에 의한  
등록 원 인 : 지번 주소의 도로명 주소 변경

등록 내 용 : 도로명주소법제20조에 의거, 순위번호2번의 의무자 김한성의 주소를 직권경정함.

변 경 사 황

변경전 : 서울 송파구 문정1동 삼성래미안아파트 129-1801

변경후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83, 129동 1801호 (문정동, 문정래미안아파트)

주소 증명 : 변경후 주소는 주소체계(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전환에 따라 변경전 주소를 직권경정한 동일한 주소임

2012년 01월 01일 등록

이하여백

1

04500